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6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혜련, 이병도,
오현정, 김동식, 김용연,
봉양순, 서윤기, 이정인,
김화숙, 김소양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‘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’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로 옮기고, 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함(제10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하고,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한다.

제10조 앞에 “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”를 삭제한다.

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제9조의2 (생략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서울특별시</u> <u>직장맘지원센터</u></p> <p>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<u>제9조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</u></p> <p>2. <u>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</u></p>	<p>제9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제10조 (현행 제9조의2와 같음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원사업

3. 일·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

사회문화 조성사업
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

지원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

<삭 제>

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

<삭 제>

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보고 및 조사) 시장은 센

<삭 제>

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

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
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
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
게 할 수 있다.

제14조 (생략)

제11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